

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(제43조의7 관련)

구 분	장애인 쉼터	피해장애아동 쉼터
1. 시설기준	<p>가.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㎡ 규모 이상으로 거실, 상담실, 화장실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그 밖에 입소 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나.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)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 다만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가.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㎡ 규모 이상으로 거실, 상담실, 화장실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나.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)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</p> <p>다.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(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)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.</p>
2. 인력기준	<p>가. 배치기준: 시설장 1명(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각 쉼터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),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</p> <p>나.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</p>	

	<p>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(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)</p> <p>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</p> <p>3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</p> <p>4)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</p>	
3. 운영기준	가. 입소정원: 8명	가. 입소정원: 4명
	<p>나. 운영시간: 주 7일, 24시간 운영</p> <p>다. 관리규정</p> <p>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) 시설의 운영방침</p> <p>2) 직제·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</p> <p>3) 입소자의 처우요령</p> <p>4) 입소·이용 규정</p> <p>5) 입소자의 생활수칙</p> <p>6)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</p> <p>7)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</p>	
4. 장부 등의 비치	<p>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</p> <p>가. 관리에 관한 장부</p> <p>1) 직원 관계철</p> <p>2) 회의록철</p> <p>3) 사업일지</p> <p>4) 문서철</p>	

5) 문서 접수·발송대장

6) 차량 운행일지

7) 안전점검표

나. 사업에 관한 장부

1) 입소자 관계 서류(상담기록카드, 입소자 카드 등)

2)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

3)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(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)

다.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

1) 총계정 원장 및 수입·지출 보조부

2)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

3) 예산서 및 결산서

4) 비품 출납대장

5) 비품 관리대장

6) 재산대장·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7)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

8)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